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052호

2. 발 의 자 : 황인구 의원

3. 발의일자 : 2019. 10. 15.

4. 회부일자 : 2019. 10. 22.

Ⅱ. 제안이유

○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미준수, 불합 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원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1.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2. 현장실습의 내실화와 참여 확대, 산업체와의 협력 제고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3. 조례의 적용범위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현장실습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6조).

- 4.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 운영기준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5. 현장실습 추진의 내실화와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한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6.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7. 현장실습의 방법,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사전교육, 현장실습 습협약과 현장실습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6조).
- 8.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단위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9. 현장실습 산업체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학부모와 졸업생 등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19조).
- 10. 현장실습 내실화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학생, 학교 등에게 포상을 할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Ⅳ. 참고사항

- 1. 관계법규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3.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Ⅴ.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10월 15일 황인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052호로 발의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 한 소양과 능력 계발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적용함으로써,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 및 일을 경험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입니다.
- 그러나 직업계고 현장실습과정에서 다수의 기업체는 학생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여 권익 및 노동인권침해 (임금미지급, 근로시간 초과, 유해위험업무 지시, 부당한 대우), 안전사고 발생1)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고,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희망·전공과 무관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등 학생의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보다는 근로에 중심을 두고 운영하는 등 제도적 문제점도 발생되었습니다.

O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학습중심 현장실

^{1) 2014}년 울산, 2017년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발생 등

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²⁾ 마련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 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대책 및 법령 개정 경과>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17.8월)	·조기취업 → 학습 중심 현장실습체제 개편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17.12월)	•조기취업 형태 현장실습 전면폐지 •현장 전수전검,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18.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학생중심 운영 ・안전 확보 범위 안에서 탄력적 운영·지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18.3월)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8.9월)	・현장실습생 인권 보호, 안전 보장 ・재학생의 현장실습 선택권 보장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19.1월)	• 운영절차 간소화를 통한 우수기업 참여 확대 • 현장실습생 안전권익보호 강화 현장실습 인프라 확충 등		

- 이에 서울시교육청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교육부, 2019)"에 따라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수립·시행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실습 지원단, 선도기업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 한편 '18년 기준 서울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수는 1,936개로 건설·공무원·금융·무역·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4,204명의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으며³), 현장실습을 통해 학교에서배운 지식과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의 산업인력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 이런 면에서 동 조례안은 학생안전·노동인권 보호와 고등학교 현장 실습의 교육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현장실습 운영계획

³⁾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선도기업	참여기업	계	선도기업	참여기업	계
학생 수	2,650	_	2,6650	2,398	1,842	4,240
기업 수	939	-	939	868	1,068	1,936

²⁾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정착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2.)

의 수립, 지도·점검, 학생의 안전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등 총칙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현장실습의 기본방향,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현장실습의 방법, 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사전교육, 협약, 지도·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체계를 교육청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 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입안실무」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부합되 도록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현장실습의 운영기준에 대한 의견(안 제7조)
 - 안 제7조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준 수립 및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의 개발·보급, 선도기업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실습 운영기준이 포함된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현장실습 운영기준, 매뉴얼 수립·검토, 선도기업의 심의·선정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교원 등으로 구성된 "선도기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협의체 구성에 있어 직업계고등학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협의체가 학교현장에 필요한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매뉴얼의 수립·검토, 선도기업의 심의·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협의체 구성·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3)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에 대한 의견(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의 발굴과 현장실습 운영기 준에 적합한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시 사전 현장방문 및 위원회의 심의, 선도기업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8조제2항에서는 현장실 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분야, 현장실습프 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1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지침의 세부적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그동안 학생의 희망·전공과 무관한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기업체의 학생노동인권침해, 안전사고 발생 등이 현장실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실습산업체 발굴 및 선정에 있어 학생의 전공 과의 연계 및 희망 수요를 반영하고, 학생안전·노동인권 보호를 위 해 사전에 산업체를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의 현장실습 가능 여 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학생의 안전 보장에 대한 의견(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과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험·공제급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는⁴⁾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와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 정한 특례조항으로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 무상 재해로 간주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제4 항5)에서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⁴⁾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 6. 4.>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제회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제외한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 제15조는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치료 와 지원, 그리고 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생 안전사고 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교육청은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407, 2019.11.18.).
- □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⁵⁾ 제19조의2(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 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2조 제4호 중 현장실습과 관련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제회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제외한 공제급여를 지급한다.

2019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지침

I. 총 칙

- 1. (성격) 이 지침은 현장실습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현장실습 운영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 ① 이 지침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 교육과정 총론, 현장실습 제도개선방안('17.8.25, 12.1), 안정적 정착 방안('18.2.23),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19.1.25.)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19.1.31)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에 의거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다.
- ② 이 지침에 제시된 기준 이외에 더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 및 제도 보완 방안에 의거하여 학교가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편성하여 시행한다.
- 2. (적용대상) 이 지침은 특수목적(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산업 (문화예술)정보학교, 일반고 직업계열(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에 적용한다.
- 3. (현장실습의 목적과 정의)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직업 체험 및 일을 경험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Ⅱ. 현장실습 운영 계획

- 4. (현장실습 운영 계획) 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 ① 학교는 현장실습이 학과별 교육과정과 인력양성유형에 연계되도록 하고,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방법 등을 포함하여 매년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학교 구성원·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예산 검토, 현장실습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 계획 등을 반영한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연간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대한 교육청의 제출 안내가 있을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교는 교원, 학부모, 지역 산업계 및 취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9인~15인으로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심의, 실습시기 결정, 학생지도 및 산업체 감독 등 현장실습 계획과 운영 전반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때, 교원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6. (현장실습 예산 편성) 학교는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도 및 추수지도 관련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운영한다. 또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참여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7. (현장실습의 방법) 현장실습은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3학년에 한함) 등으로 구분하여 전학년에 걸쳐 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체 발굴이 어렵거나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활동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 8.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는 학교와 학생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이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전 학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①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방법의 일환으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전문교과Ⅱ의 독립교과목으로 편성하거나 전문교과Ⅱ 일부에 포함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 ② 현장실습 이수 단위는 학교의 장이 학교 구성원 등과 협의를 거쳐 적정한 이수단위를 결정한다.
 - ③ 현장실습을 특정 학기에 집중하여 실시할 경우, 보통교과는 편성하지 않을 수 있고, 보통교과가 편성된 상황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 해당교과에 대한 이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교과Ⅱ의 이수는 현장실습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Ⅲ. 현장실습의 운영

- 9. (현장실습 실시)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는 실무과목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산업체를 기반으로 하는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한다.
- 10. (현장실습의 운영 시기) 현장실습은 학교의 특성과 실정,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항에 따라 운영 시기를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다양하게 운영 한다.
 - ① 교내 활동 및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포함하여 수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②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의 경우는 3학년에 실시하도록 하며, 운영기간은 최대 3개월(수업일수 1/3범위) 이내로 한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현장실습 기간 제한(3개월)의 예외로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이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아우스빌등 참여기업에서의 현장실습 및 부사관학교에 10월 이후 입교 시,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증 취득요건 고려 분야(해기사 및 간호조무사 등)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따른다.
- 11.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의 선정) 학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현장실습 운영과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면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건실한 기업 체를 발굴·선정한다.
 - ① 학교는 산업체 현장실습생의 실무능력 및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춘 현장실습업체를 발굴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운영한다.
 - ② 학교는 새로 발굴한 산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 산업체가 '현장실 습 제한 기준'에 해당되는지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관계부처와 기관 및 교육청 등이 제공하는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학생의 전공 분야, 산업체에서 실시할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 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산업체의 역량, 기존 실습생의 평가(또는 만족도)결과 등 참여기업 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서식4)을

판단하여 현장실습 기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현장실습 종료 후 학교(3학년) 수업일수 2/3 이상 출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기 취업이 가능한 선도기업'은 학교가 현장실습 지도담당자 자격, 기업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상시근로자 수, 기업의 복리 후생, 기업 CEO의 의지 등 선도기업 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서식4, 서식5)에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 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방고용청, 지방중기청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도기업을 인정하여야 한다.
- 12. (학습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학교는 현장실습 기업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실습목표 및 실습생의 직무수행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실무과목 (또는 NCS 능력단위)을 활용한 산업체별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기업과 협의하여 개별 기업에 특화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13. (현장실습 협약) 학교는 관련 법령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 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의 경우에 학교장, 학생 및 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표준 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 실시 7일 이전에 3자간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학교는 기업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및 표준협약서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배치,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등 법적 고려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산업체에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에게 교육부 지침에 근거한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표준협약서에 실습 수당을 명시해야 한다.
- ④ 학교는 기업에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지도하는 현장실습 담당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⑤ 학교는 학생이 실습 기간 중 교육목표 달성과 관련이 없는 근로를 하게 되었을 경우 즉시 복교 처리해야 한다.
- ⑥ 학교는 학생이 현장실습 기간에 현장실습 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⑦ 학교는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실습기업과 수행할 실습 내용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Ⅳ. 현장실습 학생 지도 및 감독

- 14. (현장실습생 지도) 교육청은 학교에 현장실습 관련 행·재정 사항을 지원하고 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기업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지도·점검을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 ① (사전 교육)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노동관계법(노동인권)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직업윤리교육, 실습생의 책임·의무· 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하여 실시해야 한다.
- ② (순회 지도) 학교는 온라인을 통한 순회지도를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하되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전체 실습생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반드시 방문 순회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방문지도 시 학생들의 실습상 황, 학생 건강, 현장실습표준협약의 준수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실습생 및 산업체 현장훈련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③ (지도 결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실습계획이나 현장실습협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산업체와 협의하여 실습내용 변경 요청을 하고, 지도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현장실습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학생 보호) 교원은 현장실습 산업체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 위반과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경우 취업지원센터 등 전문지원기관(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학생상담 지원, 관련법에 따른 조치 등을 통해 참여 학생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⑤ (안전사고 조치) 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은 실습장의 책임자, 부모님과 학교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즉시 치료를 받으며, 보고를 받은 관계자는 실습

학생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실습장 책임자 또는 학교는 안전사고 발생 현황, 처리방법, 사후 처리 및 후속지원 방법을 포함하여 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선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 하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15.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교육청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별 현장실습 정보를 공유하며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현장실습 표준협약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 및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한다.
- 16. (복교학생 지원)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중 학교로 복교 의사가 있는 학생은 그 사유에 대해 충분한 상담 등을 실시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학교는 복교 학생의 상담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V. 현장실습의 평가

- 17. (평가) 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과 학교의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① (학생 평가) 학교는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산업체 체험형 또는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② (산업체 현장실습생의 평가)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 출석, 태도, 일지 작성, 등을 활용하여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평가한 내용을 현장실습 평가에 반영한다.
 - ③ (학교 자체 평가) 학교는 참여기업, 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차기 년도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계 획 수립에 반영하고, 현장실습 결과 평가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약칭: 직업교육훈련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 1. "직업교육훈련"이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및「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 동을 말한다.
 - 가. 인력 · 시설 · 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
-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란 격지(隔地) 간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 2.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 6. 산학협동의 실시
 -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

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8. 3. 27., 2018. 12. 18.>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8.>
-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2.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3. 현장실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 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7. 7. 26., 2018. 3. 27.>
 - 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8. 3. 27.>
-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 1.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설비의 확보
- 2.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 4.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5.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 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 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3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 6. 4.>

-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시행 2018. 9.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2018. 9. 11., 일부개정]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 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현장실습생의 성명
-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
- 3. 직업교육훈련기관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 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 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최저임금법」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9조의2(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제2조 제4호 중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제회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제외한 공제급여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 3. 30.]